

수수료(제44조제1항 관련)

종별	근거조문	수수료	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
1. 샘플등의 개발 허가·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	법 제9조	50,000원	45,000원
2.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	법 제15조	50,000원	45,000원
3.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변경등록	법 제15조	30,000원	27,000원
4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	법 제21조제1항	50,000원	—
5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	법 제21조제1항	30,000원	—
6.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	법 제21조제2항	30,000원	—
7.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	법 제21조제2항	20,000원	—
8.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	법 제21조제3항	50,000원	—
9.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	법 제21조제3항	30,000원	—
10.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	법 제21조제6항	30,000원	—
11.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 신고	법 제21조제6항	20,000원	—
12. 정수기 제조업·수입판매업의 신고	법 제21조제7항	30,000원	27,000원
13. 정수기 제조업·수입판매업의 변경 신고	법 제21조제7항	20,000원	18,000원